

## 한국사회 새로운 소수자의 인권

정 무 성 (송실대학교)

한국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새로운 소수집단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주자, 혼혈인, 노숙인 등의 인권침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로 다른 차원이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이들 소수 집단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 존엄성 즉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제자는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인권 쟁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도 노동과 결혼이주에 따라 인구의 혼성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단순 일시체류자가 아니라 영구거주자 내지 정주자화되고 있다. 법무부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74만7467명으로 인구의 1.55%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그 비중이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2005년 내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 4만3121건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함으로써 급속한 다민족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우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다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인종적 편견, 임금체불, 인권 유린,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신분 등 그들은 한국 사회의 인권 사각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서 기인하는데, 그 기본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금지하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와 노동허가를 인정하여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양성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허가 보장하고,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수탈하는 브로커 비리색출하고 투명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 사회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결혼 이주자 중에는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인종차별의 이중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 빈곤, 가족원간의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들은 부적응 심화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및 안정적인 사회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의 불안정한 신분은 가족관계에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초래하기도 하여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제결혼가족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 중심에 있는 여성이주자에 주목하여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제결혼이 일반화돼서 혼혈인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냉대와 차별은 여전히 실정이다. 혼혈인 당사자들은 특히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고용에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혼혈이라도 백인계 혼혈과, 흑인계 혼혈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결혼시 선호하는 혼혈인에 대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인계 혼혈인이란 응답자는 64.3%로 높았지만, 황색인계 혼혈인은 25.6%, 흑인계 혼혈은 6.1%로 낮았다. 유색인종 혼혈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오천년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가진 국가라는 자부심에 갇힌 채, 외국인이나 타인종은 물론이고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아왔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연고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것이다. 이제 연고주의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이 혼혈 국민에게 동등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 및 혼혈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990년 중후반 외환위기와 함께 급속하게 늘어난 노숙인의 경우는 외국인, 혼혈인과는 다른 차원의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인들은 일반적 기본권,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침해받고 있다. 일반적 기본권 침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서 노숙인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민등록을 매매하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 노숙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과밀상태이고,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노숙인 보호시설은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노숙인들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 침해의 사례

는 응급구조대에 신고해도 돈이 없으면 노숙인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알코올중독 노숙인들이 전문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韓國社會の新しい少數者の人權

鄭茂晟(チョン・ムソン)

韓國社會の多元化により、新しい少數者集団が代表的な社會的弱者として登場しつつある。多様な集団のなかでも、移住労働者、外國人結婚移住者、混血人、ホームレス達の人權侵害が代表的なケースである。互いに異なる次元ではあるが、これらの少數集団は、共同的に人間としての尊嚴性つまり人間として当然受けるべき權利を無視されている實情である。本發題者は韓國的特殊性と關連させて彼ら少數集団の人權の争点について論ずることにする。

最近、韓國社會においても労働と結婚移住により人口の混成性が急激に増加している。1990年代から外國人の流入が増え始めたが、最近は單純一時滞在者ではなく、永久居住者及び定住者化している。法務部の2005年の統計によると國內居住外國人は74万7467名であり、人口の1.55%を占め、2010年にはその割合が2.54%に上ると予想されている。さらに、2005年の統計によると、韓國人と外國人との國際結婚が4万3121件であり、全体結婚の13.6%を占めており、速やかに多民族社會になりつつある。

まず、外國人移住労働者らは多重の苦痛に見舞われている。人種的偏見、賃金滞拂い、人權蹂躪、不法滞在者の不安な身分など、彼らは韓國社會の人權の死角地帯のなかで生きている。これは、韓國の外國人材政策によるもので、その基本は、外國人の國內就業は禁じるが、必要不可欠な最小限の範囲内で外國人の就業を選別的に許容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移住労働者の人權を保護するためには、雇用許可と労働許可を認定し、堂々と働ける權利を保障すべきである。韓國政府が意図的に養成してきた不法滞在の未登録外國人労働者への労働許可を保障し、労働3權のような労働者の權利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移住労働者を収奪するブローカーの非理を暴き、透明に導入し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によって移住労働者が堂々と生きていけるよう基本的社會保障と生活の安定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結婚した移住者の中には、國際結婚カップルの外國人女性らが韓國社會の家父長的文化と人種差別の二重の被害を受けるケースが多い。言語の問題と文化的違い、貧困、家族成

員との葛藤、支援体系不足などの複合的要因により不適應の深化のみならず子どもの教育および安定的な社會化への妨げになっている。また、外國人女性らの不安定な身分は家族關係のなかで不平等で、暴力的な關係を招くこともあり、深刻な家庭暴力の被害者になる場合も發生する。國際結婚家族が抱い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点の眞っ只中にある女性移住者に注目し、多様な社會福祉プログラムの開發が要求される。

國際結婚が一般化され混血人が急増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彼らへの冷遇と差別は依然としてある。混血人当事者は特に學校での差別といじめ、雇用における差別が最も深刻な問題であると認識していた。混血といっても白人系混血と黒人系混血に對する態度には違いがある。結婚時好まれる混血人に對する結婚情報會社のアンケート調査によると、白人系混血人と答えた人は64.3%と高く、黄色人系混血人は25.6%、黒人系混血は6.1%と低かった。有色人種混血人に對する差別意識を如實に現している。

我々は、教育によって5千年の單一民族としての歴史をもつ國であるという自負心のなかに閉じ込められており、外國人や他人種はもちろん混血人に對する差別と蔑視を當然の事のように考える社會的雰囲気の中で生きてきた。私と違う相手に對してはそれを認めたり、尊重したりしないわが社會の持病である緣故主義を當然の事如くしてきたのである。緣故主義の文化に慣れ親しんだ韓國人が混血の國民に對して同等の人權を保障してあげるこそ社會正義の實現であるといえる。一般の市民らが多様性を受容した態度を硬く守り、共に生きる社會環境を作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と同時に、外國人及び混血人差別禁止法の制定など制度的裝置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1990年代中後半、外國爲替危機とともに急速に増加した野宿者の場合、外國人、混血人とは別の次元での人權侵害に露出されている。最近の國家人權委員會の‘野宿者人權狀況實態調査’報告書によると野宿者達は一般的基本權、住居權、労働權、健康權などの侵害を受けているとされた。一般的基本權侵害は、社會構成員としての基本的人權の保障を受けられないことを意味するが、一般の市民が道端で野宿者に對して言語的・物理的暴力を行使したり、住民登録を賣買したり、名義を盗用する等、野宿の状況を悪用することが調査に現れた。住居權侵害に關連しては、野宿者のためのシェルターは大部分過密状態であり、個人の私生活(プライバシー)が保障されないことと調査された。また、一部の野宿者保護施設は宗教行事を強要する場合もあることがわかった。労働權侵害に關連しては、野宿者達は住民登録証などの身分証がなく就業できない場合が多いことがわかった。働いても賃金が受け取れず、不法な仕事に動員される場合もあった。最後に、健康權侵害のケースとしては、救急隊に電話してもお金がなければ野宿者を病院に後送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ま

た、アルコール中毒になった野宿者達が専門的治療を受けられないということも重要な問題であるといえよう。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自由と人権を保障する社会正義を実現するためには、一般市民の意識変化と共に、差別を防止できる法制度的装置が強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積極的な社会福祉プログラムの開発を通して社会統合を達成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